

#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변 호	725
------------	-----

2019. 6.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1. 안 전 명 : 서울특별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

## 2.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2025 서울시 도  
시재생 전략계획(’18.7.5)’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음.

나. 본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에 대해 「도시재생 활  
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서울  
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함

## 3. 주요내용

### 가. 사업취지

- 2019년 하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공모 신청을 위한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그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17.6.1 고시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

## 나. 주요 추진경위

- `15. 2. 25 : 세운상가군 활성화(재생) 종합계획 수립
- `15.12. 10 :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서울시공고 제2015-2189호)
- `17. 6. 1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고시(서울시고시 제2017-198호)
- `17. 9. 19 : 1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사업 완공
- `18. 3. 27 : 2단계 구간 공공공간 조성사업 착수('20.5. 완공예정)
- `18. 7. 5 :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서울시공고 제2018-1570호)
- `19. 5. 31 : 공청회 개최(예정)

## 다. 도시재생뉴딜 공모 신청 계획

- 사업유형 : 공공기관 제안형(중심시가지형)
- 사업면적 : 285,291㎡
- 사업기간 : 2019 ~ 2023(5년간)
- 사업비 : 375억(국비 150(40%) + 지방비 225억(60%))
- 신청자 : 서울시 + SH + LH
- 주요사업 :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거점 확충

## 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 내용

- (뉴딜 신규사업) 도심산업(제조·인쇄) 활성화를 위한 거점 7개소 확충
  - 소상공인 공공임대 공급, 산업거점 및 청년·창업지원시설 조성
  - 공연·전시관, 도서관, 공동화장실·샤워실 등 생활SOC 조성



- (기정계획 변경) 기존 1,2단계 추진사업의 계획 변경
  - (신규)재정비축진지구 내 정비사업 해제구역의 건축물 개보수 비용 지원
  - 1,2단계 공사비 및 신규 사업비 등 총사업비의 증가 및 기간 연장
- 뉴딜 신규사업 및 기정 계획변경을 통합한 사업기간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
  - 사업기간 : 당초)2015년~2019년 → 변경)2015년~2023년(4년↑)
  - 총사업비 : 당초)1,008억 → 변경)2,187억(1,179억↑)
  - (※ 시비 투입 : 1,008억 → 1,469억(461억↑))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5. 검토의견

##### 제출 경위

- 이 의견청취안은 세운상가 일대 활성화지역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신청(붙임 1)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에 고시<sup>1)</sup>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sup>2)</sup>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호-198호(2017.6.1)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인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으로서, 법 제20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됨.

-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5년 「2025 도시재생 전략 계획」 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중심시가지형) 1단계로 선정된 13개소 중 하나임.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먼저, 지정 활성화계획에 따라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심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임대 상가의 공급 등 산업거점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 (서울시,SH,LH 공동)을 위한 신규사업(7개) 추가 및 이에 따른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 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임.



## □ 활성화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 ○ 활성화계획의 추진방향

- '17.6월 기 수립된 활성화계획은 도심산업의 재생과 상가군 1,2단계 구간의 공중보행데크 등 공공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일대를 명소화하는 보행재생, 주민 삶의 방식과 역사를 존중하는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공동체재생을 목표로 하였다면,

변경계획(안)은 문화·관광과 연계된 도심산업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거점시설 확충을 중점 추진하여, 기존 세운상가군 중심에서 벗어나 세운상가군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도시재생의 활력 확산'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함.



### ○ 활성화계획의 주요 변경사항

- 기정 활성화계획에서 결정된 '산업재생', '보행재생', '공동체재생' 등 3개

핵심목표를 기반으로 금회 활성화계획 변경은 기정 사업계획의 변경사항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뉴딜사업계획을 신규사업에 반영하는 것임.

- 먼저, ‘도심산업 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운상가군 중심의 도시재생에서 세운상가 주변지역 일대에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공급, 열악한 도심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산업종사자 생활SOC 공급, 그리고 지역활력을 위해 젊은 메이커와 창작자들의 유입을 위한 청년주택 및 코워킹스페이스 등 지원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거점공간 7개소를 조성함. 또한, 메이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과 주민주도 지역재생기반을 위한 다시세운 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주민역량강화, 협동사업은 지속적 운영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존 활성화 계획의 사업을 뉴딜사업으로 연장 반영하여 추진함.

국토부 뉴딜사업 신청사항	기존 활성화계획 주요 변경사항
<p><b>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뉴딜(신규) 사업 추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 2019~2023(5년간)</li> <li>• 사업비 : 749억(국 150 + 지방 225 + 기타 374)</li> <li>• 총 11개 사업(신규 7 + 센터운영 등 기존 지속 사업 4)</li> </ul>	<p><b>1·2단계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공사기간 및 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2023년 까지 연장(당초 2015~2019→변경 2015~2023)</li> <li>• 1·2단계 사업비 증액(당초 1,008억→변경 1,246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조성</li> <li>-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심산업 거점공간 조성</li> <li>- 젊은 창작자 유입과 지원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셰어하우스 조성</li> <li>- 열악한 도심산업 환경개선을 위한 생활 SOC 공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단계 공사비 증액</li> <li>- 1·2단계 거점공간 조성·운영 및 거버넌스 운영비 등 증액</li> <li>- 도시재생기반시설 추가 지정</li> <li>- (신규) 노후건축물 개보수 비용 지원</li> </ul>

- 세운상가군 1,2단계 공공공간 조성공사비 증가 (당초) 841억 → (변경) 995억, 154억원 증가
- (신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 개보수 지원사업 추진, 40억원 증가
- 기타 거점공간 매입조성, 협동사업비 등 44억원 증가

- 신규사업 추가로 사업비는 '17.6월 고시된 1,008억원에서 1,246 억원으로 238억원 증가함.
- 현재 세운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규모는 총 439,356.4㎡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뉴딜사업 대상지 기준<sup>3)</sup>(붙임 2)에 맞추어 3구역, 4구역, 6-3구역과, 6-4구역 일부를 대상지에서 제외하여 280,116㎡로 규모를 축소조정하고, 뉴딜사업에 따른 국비는 뉴딜지역내로 한정하여 투자하게 됨. 뉴딜에서 제외된 구역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구역임(붙임 3).

뉴딜사업 공간범위규정	
(권장면적규모)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도모하고 부동산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5만㎡~50만㎡까지 면적기준 제시	
※ 중심시가지형 20만㎡ 내외	
구역	면적 (㎡)
2구역	38,963
5구역	38,576
6-1구역	44,390
6-2구역	63,214
6-4구역	25,355
세운상가군	42,866
기타(도로 등)	26,752
<b>소계</b>	<b>280,116</b>

3) '19.상반기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중심시가지형의 권장면적 규모는 20만㎡ 내외로 제시되어, 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은 약 43만㎡로 뉴딜사업구역 별도 지정 필요

**<기정 사업계획변경안 및 사업비 증감 내역>**

(단위 : 억원)

분야	단위사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기간	
합계		1,008	'15~'19	1,246 (238↑)	'15~'23	
산업 재생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47	'15~'19	77 (30↑)	'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심산업 거점공간 매입 소요액 25억 증가</li> <li>◦ 청년주택 10호 리모델링보조금 4억 등 증가</li> </ul>
	2 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3	'17	3	'17	변경없음
	메이커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69	'16~'19	64 (5↓)	'16~'19	큐브 등 거점공간 관리운영 비용 4억 감소 등 (당초 4,641 → 변경 4,218)
공동체 재생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9	'16~'19	8 (1↓)	'16~'19	1,2단계 주민소통, 주체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사업비 1억 감소
	주민역량강화	8	'16~'19	10 (2↑)	'16~'19	1,2단계 상인대학,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2억 증가
	협동사업	29	'16~'19	44 (15↑)	'16~'19	주민공모, 노후된 상가군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확대에 따른 사업비 15억 증가
	노후불량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지원	-	-	40 (40↑)	'20~'23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물 개보수 비용지원 산기사업 40억 증가
보행 재생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2	'16	5 (3↑)	'16~'18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후 간양상가·남산 보행네트워크 실시계획 추진으로 3억 증가
	세운상가군 1 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471	'14~'17	480 (9↑)	'14~'17	완공된 1단계 구간 공비 9억 증가
	세운상가군 2 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370	'17~'19	515 (145↑)	'17~'20	공사중인 2단계 구간 공비 145 증액 필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사업 1,246억원, 부처연  
계사업 192억원 외에 사업비 749억원(국비 150억원, 지방비 225억  
원, 기타 374억원)이 추가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2,187억원으로 증  
가하게 됨. 사업기간은 뉴딜사업 기간에 맞추어 당초 '15~'19년에  
서 '15~'23년까지 연장함.

**뉴딜 사업**

뉴딜 국비+지방비 375억원 포함 '19~'23년까지 총 749억 마중물사업으로 투자

재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단기별 재원투입				
	단위사업	계	뉴딜 국비	뉴딜 지방비	공공기관 /7년	'19	'20	'21	'22	'23
산업 재생	도심제조 공공임대상가 조성	93	11	6	76	14	77	2	-	-
	청계 산업디자인 지원센터	95	20	26	49	-	46	39	5	5
	인현동 인쇄 혁신 플랫폼	95	20	26	49	-	46	39	5	5
	인쇄산업 공공임대상가 조성	97	21	27	49	-	48	39	5	5
	코워킹스페이스 및 셰어하우스 조성 및 운영(활성화지역 내)	80	11	9	60	60	5	5	5	5
	산업종사자 지원 생활 SOC 조성 운영(인현동 2가 지역 내)	26	13	7	6	-	16	5	3	2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	105	8	12 (구비 2)	85	-	2	3	-	100
	(뉴)메이커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128	32	96	-	-	43	37	24	24
공동체 재생	(뉴)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8	4	4	-	-	2	2	2	2
	(뉴)주민역량강화	8	4	4	-	-	2	2	2	2
	(뉴)협동사업	14	6	8	-	-	8	2	2	2
	소계	749	150	225	374	74	295	175	53	152

사업 뉴딜 신규사업 사업 뉴딜 반영 기존 사업

**변경 활성화계획**

기정 1,008억에서 1,246억(증 238억)으로 재생사업비 변경. '14년~'23년까지 지자체사업 투자

**부처협업사업**

인쇄 스마트앵커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사업 41억원 포함 총 192억 투자

<뉴딜사업 선정시 사업계획변경안>

구분	변경 전	
	단위사업	사업비
	9개 사업	1,008
마중물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2
	세운메이커스 큐브 및 세운협업지원센터 운영	69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47
	2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3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9
	주민역량강화	8
	협동사업	29
지자체	세운상가군 1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471
	세운상가군 2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370

⇒

구분	변경 후	
	단위사업	사업비
	22개 사업	2,187
마중물 ~ 뉴딜 ~	(신규) 도심제조 공공임대상가 건립	93
	(신규) 청계 산업디자인 지원센터 건립	95
	(신규) 인현동 인쇄 혁신 플랫폼 건립	95
	(신규) 인쇄산업 공공임대상가 건립	97
	(신규) 코워킹스페이스 및 셰어하우스 조성	80
	(신규) 산업종사자 지원 생활 SOC 건립	26
	(신규) 서울메이커스파크 조성	105
	메이커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128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8
	주민역량강화	8
지자체	협동사업	14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77
	2 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3
	메이커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64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8
	주민역량강화	10
	협동사업	44
부처협업	(신규) 노후불량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지원	40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5
	세운상가군 1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480
	세운상가군 2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515
인쇄스마트앵커시설 조성 운영	192	

- '19년 하반기 국토부 뉴딜사업에 미신청 또는 미선정<sup>4)</sup>될 경우에는 신규 뉴딜사업을 제외하고, 지속적 사업 운영이 필요한 4개 사업(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운영, 주민역량강화, 협동사업, 메이커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을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하고, 사업비는 당초 1,008억원에서 396억원 증가하는 총 1,404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뉴딜사업 미신청 또는 미선정시 사업계획변경안>

분야	단위사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기간			
합계		1,008	'14~'19	1,404 (396↑)	'14~'23			
마중물사업	공동체 재생	다시세운시민협의회 구성 운영	9	'16~'19	16 (7↑)	'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단계 주민소통, 주체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사업비 1억 감소</li> <li>사업기간 4년 연장('19~'23)에 따른 8억 증가</li> <li>1.2단계 상인대학,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비 2억 증가</li> <li>사업기간 4년 연장('19~'23)에 따른 8억 증가</li> <li>주민공모, 노후된 상가군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 확대에 따른 사업비 15억 증가</li> <li>사업기간 4년 연장('19~'23)에 따른 14억 증가</li> <li>큐브 등 거점공간 관리운영 비용 4억 감소 등 (당초 4,641 → 변경 4,218)</li> <li>사업기간 4년 연장('19~'23)에 따른 128억 증가</li> </ul>	
		주민역량강화	8	'16~'19	18 (10↑)	'16~'23		
		협동사업	29	'16~'19	58 (29↑)	'16~'23		
지자체사업	산업 재생	메이커스큐브 및 협업지원센터 운영	69	'16~'19	192 (123↑)	'1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큐브 등 거점공간 관리운영 비용 4억 감소 등 (당초 4,641 → 변경 4,218)</li> <li>사업기간 4년 연장('19~'23)에 따른 128억 증가</li> <li>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건축물 개보수 비용지원 신규사업 40억 증가</li> <li>19년 도심산업 거점공간 매입 소요액 25억 증가</li> <li>19년 청년주택 10호 리모델링보조금 4억 등 증가</li> </ul>	
	공동체 재생	(신규)노후불량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지원	-	-	40 (40↑)	'20~'23		
	산업 재생	거점공간 조성 및 전략기관 유치	47	'15~'19	77 (30↑)	'15~'20		
		2 단계 구간 주변지역 산업고도화	3	'17	3	'17		변경없음
	보행 재생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구축	2	'16	5 (3↑)	'16~'18		세운상가군 주변 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수립 후 진양상가·남산 보행네트워크 실시계획 추진으로 3억 증가
		세운상가군 1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471	'14~'17	480 (9↑)	'14~'17		완공된 1단계 구간 공사비 9억 증가
세운상가군 2단계구간 공공공간 조성		370	'17~'19	515 (145↑)	'17~'20	공사중인 2단계 구간 공사비 145 증액		

4)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의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상반기 기준에 따른 경우 부동산 기준에 부적합하나, 하반기에는 부동산기준 완화 검토 중임에 따라, 공모 접수일정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임.

- 상반기 부동산 기준 : '19.5월말 기준 부적정(종로, 중구 초과)
  - ▶ 제외기준 : '17.8.2. 부동산대책 이후 신청 당시까지 누적 집값상승률이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인 기초지자체(시·군·구 등)
  - ▶ '17.7~'19.5월 상승률 : 서울평균 7.09% / 종로 7.26 / 중구 9.48)

## □ 검토사항

- 금회 활성화계획의 변경은 기정 활성화계획에서 결정된 ‘산업재생’, ‘보행재생’, ‘공동체재생’ 등 3개 핵심목표를 유지하되, 기정 사업계획의 변경과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신규 뉴딜사업계획을 반영하는 것임.
- 그 동안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로는 종묘~대림상가 1단계 구간의 공중보행교 신설 및 데크 정비(보행재생), 창의제조 및 창작인쇄산업 혁신처 조성 추진(산업재생)으로 4대 전략기관을 유치(시립대, 씨즈, 팹랩, 사경센터)하고, 산업재생을 위한 거점공간 확충 및 기술중개소 등의 운영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임.
- 이번 활성화계획의 변경은 지원센터와 플랫폼, 코워킹스페이스 및 셰어하우스, 재개발로 퇴거위기에 몰린 청계천 공구상가 상인 등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 도심산업생태계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거점시설을 추가 확충하여 세운상가군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도시재생의 활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 다만, 현재 세운 활성화지역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중복 지정된 곳으로 뉴딜사업의 추진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계획별 관계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함. 뉴딜사업에 포함된 구역은 ‘14.3.27 구역지정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 대상임. 세운상가를 제외하고 뉴딜지역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도심전통산업(공구, 조명, 인쇄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보전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그에 따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또한, 이 지역일대는 화재 등 안전에 매우 취약한 지역인 바, 생활SOC사업 추진시 안전에 취약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 등 상인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 외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임경숙
연 락 처	02-2180-8205
이 메 일	kslinga@seoul.go.kr

'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향 (국토부 가이드라인, '19.1)

- 선정물량 : 100곳 내외(시·도선정사업 70곳, 중앙선정 30곳)
  - 시도선정 : 예산총액 내 중소규모 사업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 중앙선정 : 중심시가지형 15곳, 경제기반형 5곳, 공공기관 제안방식 10곳
- 선정시기 : 3월중 전체물량 30%, 하반기 70%
- 선정대상 : 활성화계획(안) 완료지역(2월중 공청회 개최)

< '19년도 선정규모 >

구분	시·도 선정		중앙정부 선정			
			지자체 신청		공공기관 제안	
신청·제안	구청장		시장, 구청장(근린재생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시장(구청장)	
평가주체	시·도지사		중앙정부(국토교통부)			
신청 사업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개 사업유형	
선정규모	70곳 내외		20곳 내외		10곳 내외 (5개 사업유형)	
선정시기별 선정물량	3월	하반기	3월	하반기	3월	하반기
	14곳 내외	56곳 내외	5곳 내외	15곳 내외	3곳 내외	7곳 내외
신청 가능지역	신청 공고일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최종 평가 시작 전까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가능한 지역					

서울시 참여대상

- 시장안정기준을 마련하여 선별후 신청
  - 중앙정부 선정 사업은 공공기관 제안형만 가능
  - 광역지자체 선정규모로 서울은 7곳 물량 배정(우리동네살리기 2)

\* '17.08.02 8.2부동산대책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평균 이하인 기초자치구  
 '18.09.13 9.13부동산대책 이후 누적 집값상승률이 평균 이하인 기초자치구  
 (우리동네살리기만 가능)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기금 활용 등)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자율 (시군구자율편성)	지역지원			
개별사업 시행근거	개별법령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포함)			개별 법령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 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권장면적	5만㎡ 내외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b>20만㎡ 내외</b>	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50억원 /3년	100억원 /4년		<b>150억원 /5년</b>	250억원 /6년

구역명	정비 구역수	추진현황		뉴딜 포함 여부
		정비사업 추진현황	일몰제 대상	
합계	171		152	
2구역	35	◦ 진행사항 없음	◦ 전체구역	포함
3구역	10	◦ 3-1,4,5구역 : 관리처분인가 ◦ 3-2,6,7구역 : 사업시행인가 ◦ 3-3,9구역 : 사업시행인가 신청 ◦ 3-8,10구역 : 진행사항 없음	◦ 2개구역	-
4구역	1	◦ 사업시행자 : SH공사 ◦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중	-	-
5구역	11	◦ 5-1,3구역 : 사업시행인가 신청 ◦ 나머지 9개구역 : 진행사항 없음	◦ 9개구역	포함
6-1구역	32	◦ 진행사항 없음	◦ 전체구역	포함
6-2구역	50	◦ 6-2-8,24,46구역 : 사업시행인가 ◦ 나머지 47개구역 : 진행사항 없음	◦ 47개구역	포함
6-3구역	9	◦ 6-3-1,2구역 : 준공 ◦ 6-3-3구역 ; 사업시행인가 ◦ 6-3-4구역 : 사업시행인가 ◦ 나머지 5개구역 : 진행사항 없음	◦ 5개구역	-
6-4구역	23	◦ 6-4-21구역 : 관리처분인가 ◦ 나머지 22개구역 ; 진행사항 없음	◦ 22개구역	포함